

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 
관리·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충청북도의회  
산업경제위원회

#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·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22년 10월 31일

나. 회부일자 : 2022년 11월 2일

3. 제안이유

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 평가항목 적용 문구 일부를 수정하고, 친환경농업 확산에 기여하는 농업인 단체, 협회 등의 참여·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평가항목을 신설하여 친환경 농산물 재배 확대 및 유기식품 등의 생산·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조문 문구 일부 수정(안 제12조제3항)

나.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 평가 항목 신설(안 제12조제3항제8호)

## 5. 검토의견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복순)

### 가. 제출배경

- 충청북도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친환경 유기농·무농약 농가(이하 “친환경농가”라 한다)와 친환경농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에 관심있는 관행 농가<sup>1)</sup>를 대상으로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
- 그러나 보조금을 지원받은 관행 농가 중 일부는 각종 지원을 받고도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조례를 개정하여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친환경 농가 또는 친환경 전환 희망 농가를 차등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
- 또한, 친환경농업인 간 정보교류, 결속력 강화, 친환경농업 발전에 기여하는 친환경 농업인 단체활동 촉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마련이 필요함

### 나. 조례안의 주요 개정조항에 대한 의견

- 안 제12조는 친환경농산물과 유기식품등 생산·유통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<sup>2)</sup>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<sup>3)</sup>에 따라 친환경

1) 화학 비료와 유기 합성 농약을 사용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관행적인 농업 형태를 유지하는 농가

2)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(시행 2021. 10. 14.) 제16조(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·유통·수출 지원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·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물품의 생산자, 생산자단체, 유통업자, 수출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자금 등을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및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.(각호 생략)

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3)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시행 2022. 6. 1.)

농수산물 등의 생산·유통 지원 등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여 친환경 농업인을 차등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

○ 이 조례안 제12조제3항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

- (평가항목 확대) 친환경농수산물등의 생산·유통 등을 차등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여도 평가항목을 기존 ‘농업환경의 유지 실적, 친환경 인증면적 증가실적 등’ 에서 ‘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협회 등 민간단체 참여·활동기간’ 항목을 신설하여 평가요소를 7개 항목에서 8개 항목으로 확대하였음
- (용어 정비) 기여도 평가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‘각 호 모두’ 에서 ‘각 호’ 로 변경하여 상위법령의 평가기준과 일치되도록 용어를 정비함
-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

구 분	현행	변경
평가항목 확대	◦ 7개 사항	◦ 8개 사항 -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협회 등 민간단체 참여·활동기간 (8호 신설)
용어정비	◦ 각 호 <b>모두의 사항을</b> 고려	◦ 각 호의 사항을 고려

제2조(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) 농림축산식품부장관·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제1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

1. 농어업 환경의 유지·개선 실적
2.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(이하 “유기식품등” 이라 한다), 친환경농수산물 또는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·유통·수출 실적
3. 유기식품등, 무농약농산물, 무농약원료가공식품,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의 인증 실적 및 사후관리 실적
4. 친환경농어업 기술의 개발·보급 실적
5. 친환경농어업에 관한 교육·훈련 실적
6. 농약·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량 감축 실적
7. 축산분뇨를 퇴비 및 액체비료 등으로 자원화한 실적

- 친환경농업 기여도 평가항목의 확대는 친환경 농업인등을 차등적으로 지원하여 관행 농업의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유도와 친환경 농업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, 정책적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됨
- 다만, 안 제12조제3항제8호 신설에 따른 ‘협회 등 민간단체<sup>4)</sup>’ 현황, 민간단체에서 활동하여 친환경 농업인들이 얻을 수 있는 이점, 민간단체 참여 및 활동기간에 대한 평가 기준, 조례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

#### 다. 종합의견

- 이 조례안은 친환경농업 전환과 친환경농업인 단체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률적인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,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
- 다만, 차등지원을 위한 기여도 평가시 민간단체 참여 및 활동기간의 평가기준, 민간단체의 현황과 단체활동의 이점 등 조례 개정의 기대효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

---

4) 충청북도에는 ‘사단법인 충청북도 친환경농업인연합회’가 있으며, 이 단체는 친환경 농산물인증을 받은 친환경 농업인만 가입할 수 있음